

--주주님께

제 40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제 40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 22 조 및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년 03 월 30 일(수요일) 오전 10 시 00 분
2.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본사 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40 기(2021.1.1 ~ 202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제13조의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3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전자증권법 제37조제4항제3호가목 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신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기존 제13조의2의 내용을 이관함.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생략)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반공모의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반공모의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여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여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 액면총액의 변경.

현행	개정	개정이유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재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재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생략) 1.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재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1.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재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액면총액의 변경.
제17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액면총액의 변경.
제18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u>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액면총액의 변경.
제54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u>이사회 결의로</u> 정하는 <u>배당기준일 현재</u>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제54조 (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u>현재</u>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 기준일 제도 운영상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선임의 건

3-1 호 의안 : 사내이사 윤성덕 후보 선임의 건 (재선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윤성덕	1958.03.20	現 (주)태광 대표이사 前 (주)태광 부사장 - 부산대 국제대학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이사회	보통주 2,257,541주 보유	특수관계인

성 명	제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윤성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2년 3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체온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최근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가급적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추후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 발생 시 정정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8. 기타사항

상법 시행령 제 31 조제 4 항 4 호에 따른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 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tkbend.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03 월 일



주식회사 태 광
대표이사 윤 성 덕 (직인생략)